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63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문진석 · 박정현 · 부승찬
김한규 · 복기왕 · 朴芝源
손명수 · 이정문 · 최혁진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
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다.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9제2항제1호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9(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5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3\text{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text{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text{누적 납입금액}$
--

④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⑥ 신탁업자등은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

146조의2에 따라 추정하여야 한다.

⑦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⑧ 국세청장은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⑪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

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증명서를 신탁업자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 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소득공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91조의29제3항에 따른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공제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

1. -----

-----제91
조의28, 제91조의29-----

-----국민참여형 국민
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청
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증권

2. ~ 4. (생략)

② ~ ⑥ (생략)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9제2항제1호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9(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을 초과하

는 자는 제외한다)

③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청년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

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5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3\text{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text{누적 납입금액}$

④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⑥ 신탁업자등은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⑦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⑧ 국세청장은 청년형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

	<u>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u> ⑪ <u>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증명서를 신탁업자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⑫ <u>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소득공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 ----- ----- -----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91

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
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
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
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
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중
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중
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
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
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중
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
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
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 7의2. (생략)

조의29-----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
의 종합한도) ① -----

-----.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정하여 추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

7의3. 제91조의29제3항에 따른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공제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	-----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
에 따라 계산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